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5일, 정진욱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진욱의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현행 금연구역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생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학력 인정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개정안을 통하여 흡연과 관련한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추가되는 금연구역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학교의 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행(제9조제4항제6호)과 같이 “대안교육기관 [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금연구역 시설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는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금연구역 시설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는 표현을 일부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라는 표현을 ‘[대안교육기관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로 정비함(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 나.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함(안 부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校
 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신설>	<u>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u>	<u>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u>

	<u>를」에 따른 대</u> <u>안교육기관의 교</u> <u>사(체육장을 포</u> <u>함한다)와 교지</u>	<u>를」에 따른 대안</u> <u>교육기관[교사(校</u> <u>舎)와 운동장 등</u> <u>모든 구역을 포함</u> <u>한다]</u>
7. ~ 26. (생 략)	7. ~ 26. (현행과 같음)	7. ~ 26. (개정안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3개</u> <u>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u>공포 후 6개</u> <u>월</u> ----- -----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校
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 <u>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 26. (생 략)	7. ~ 26.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